

2023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유치원(보건) · 특수(유치원)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목 차



유치원(보건)

제 1 장 총칙	3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5
제 3 장 승진	5
제 4 장 전직	6
제 5 장 전보	7
제 6 장 사·도 간의 교류	11
제 7 장 수석교사	12
부 칙	14
>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직위 근속연한	24
> <표 2> 가산점 평정표	25
> <표 3> 유치원 교사·원감 경력점 조건표	27



특수(유치원)

제 1 장 총칙	31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33
제 3 장 승진	34
제 4 장 전직	34
제 5 장 전보	35
제 6 장 국·공립학교 및 사·도간의 교류	39
부 칙	40
>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직위 근속연한	42
> <표 2> 가산점 평정표	43

유치원(보건)





제 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법규에 의한 신규 채용, 전보, 전직, 승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 ① 이 기준은 본 도의 공립유치원 교원(보건교사)과 유아교육 전문직원 인사에 적용한다.<개정 2021.10.6.>
-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청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수석교사,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비정기 전보]

- ① 수석교사,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1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당해 유치원 재직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원)장은 전보 요청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 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전보 제외)
10.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1.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원장, 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행정 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당해 유치원 재직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유치원 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①항 2~8호에 해당하는 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④ 원장은 유치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제 5 조[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 6 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의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 7 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 ① 신규 채용자는 유치원교사(보건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배정한다.〈개정 2021.10.6.〉
- ② 교사 전보 시에는 시·군별 결원의 일정 비율을 신규 채용자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자를 교육장이 임용한다.
- ④ 신규 채용 교사중 성적 우수자(임용고시 상위 3% 이내)는 본도 인사구역의 ‘가’ 급지 또는 희망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0.7.13.〉

제 8 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계약제 교원은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다.〈개정 2011.10.24.〉

제 3 장 승 진

제 9 조[승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2. 교육공무원 임용 후 자격을 취득한 승진후보자명부 기 등재자〈개정 2016.1.15.〉

제 10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본도 인사구역의 ‘가’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 급지 전입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전 직

제 11 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개정2021.7.12.〉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해당 기준에 따라 임용(제청)한다.

- ① 장학(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단, 현직 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장학(교육연구)사는 원감 또는 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③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장학(교육연구)사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 및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④ 원장 및 교육전문직원 경험이 있는 자의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은 ②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현직 교원의 전문직원 임용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 ⑥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직속 기관의 장학(교육연구)사 임용 절차는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12 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 전직]

- 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원감 또는 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개정 2020.7.13.〉
- ② 전 항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은 별칙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5 장 전 보

제 13 조[교사·원감의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금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 ② 교사·원감의 인사구역 근속연한은 <표 1>과 같이 하되 가, 나 급지의 근속연한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사의 경우 가, 나 급지 통산하여 단설 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8.>
- ③ ‘가’, ‘나’ 급지의 도서·벽지유치원, 준벽지유치원 근무경력은 당해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준벽지유치원의 제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7.10.><개정 2019.7.8.>
- ④ 휴직 기간 및 파견된 기간은 당해 유치원(시·군)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14 조[교사·원감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시·군 및 유치원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유치원 근무기간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2.10.23.> <개정 2019.7.8.>
- ② 인사구역 시·군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가’ 급지 근무연한 만료자는 ‘나’, ‘다’, ‘라’ 급지에 전보하며, ‘나’ 급지 만료자와 ‘가’, ‘나’ 급지 계속근무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④ 도서·벽지 유치원 근무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당지역 교육장이 정한다.
- ⑤ 익년도에 급지간 순환전보 대상자는 학년도 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 ⑥ 원감은 직무수행 능력, 유치원 평가, 장학실적, 경력, 청렴성, 학부모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⑦ 동일 유치원 근속연한 만기자가 급지내 순환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급지로 전보한다.
- ⑧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7.7.10.>

제 15 조[교사·원감의 전보 서열 명부 작성]

- ① 원감·교사의 사·군간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원감, 교사별 인사구역별로 전보서열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 ② 도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의 전임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급지에 준한다.〈개정 2017.7.10.〉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경력점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기간은 당해 유치원 근무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 ③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실적과 표창에 한하되 우수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휴직기간, 파견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개정 2014.10.13.〉
- 〈표 2〉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한다. 〈개정 2013.10.17.〉 단, 정보화 관련 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며, 수업명사 자격은 취득 후 10년간 전보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3.10.17., 2015.5.15.〉
- ④ 인사구역 급지에 대한 경력점은 최근 4년에 한하여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⑤ 전보서열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유치원 장기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7.10.〉



제 16 조[교사·원감의 전보]

- ① 원감, 교사의 전보는 서열명부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 ② 교육지원청 관내 급지 및 학교 간의 전보는 교육장이 행한다.

제 17 조[교사·원감의 전보 우선]<개정 2022.7.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전보 할 수 있다.

- ①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상장 또는 지도상 수상자
- ② ‘가’, ‘나’ 급지 근무자 중 동일 급지 간 전보 희망자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전보할 수 있다.
- ③ 도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유치원의 과제 해결 및 그 외 유치원이 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영역의 우수 교사로서 전보권자가 승인한 자
- ④ 매년 2월 말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만 2세 미만 자녀에는 2월말 일까지의 출산예정 자녀를 포함한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전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0.24., 개정 2012.10.23., 개정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⑤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18 조[교사·원감의 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1.10.24.>

1. 도 지정 이상의 연구유치원 근무자로서 진행 중인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원감, 연구부장(연구주무)교사
2.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3.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원감, 교사<신설 2018.7.17.>
4. 행복학교 운영상 꼭 필요한 핵심교사(1명)<신설 2020.7.13.>
(2021.3.1.이후 실적)

제 19 조[교사·원감의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① 전보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1.10.24.〉

② 정원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전보된 자는 전임 유치원의 근무경력을 현임 유치원의
근속 경력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 20 조[원장의 전보 및 근속연한]

원장의 전보는 유치원 경영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유치원간 전보는 〈표 1〉과 같이 동일유치원, 동일 직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직무수행 능력, 유치원 평가, 장학실적, 경력,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 다만,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해 1년 이상자도 전보할 수 있다.
- ② 인사구역 및 시·군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가’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와 ‘가’, ‘나’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④ ‘가’, ‘나’ 급지간 계속 근무연한은 통산하며, ‘나’ 급지 근속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가’ 급지의 동일 교육지원청 내 유치원간 계속 전보는 1회에 한한다.
- ⑥ 익년도에 급지간 순환전보 대상자는 학년 도중에 관내 전보할 수 없다.

제 21 조[원장의 전보 유예]

전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교육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퇴임, 원장 중임 만료 1년 이내인 원장〈개정 2018.7.17.〉
2.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22 조[교육전문직원의 전보]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 ② 당해 교육청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③ 동일 근무처에서 5년 이상 동일 직위에서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전보유예를 신청하여(본인의 희망서 첨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 6 장 사·도 간 교류

제 23 조[교류]

-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순위자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8.7.17.> <개정 2019.7.8.>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사·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순위	○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사·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개정 2019.7.8.>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 전출희망 사·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사·도에 부부 중 한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3 순위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 ④ 전출 대상자 요건과 선정 순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개정 2013.10.17.〉

제 24 조[교환[파견] 근무]

- ① 교육의 지역간, 기관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 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상호 1:1 동수 원칙으로 파견근무토록 할 수 있다.
-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7 장 수석교사

제 25 조[수석교사의 인사구역 및 근속연한]

- ① 수석교사의 인사구역 근속연한은 〈표 1〉과 같다.
- ② 당해 급지 및 동일 유치원 근속연한은 수석교사 임용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17.7.10.〉

제 26 조[수석교사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시·군 및 유치원간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수석교사의 동일 유치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4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시·군간 전보는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가’, ‘나’ 급지 근속연한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
- ③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할 경우는 본인의 희망과 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또는 타시·군으로 전보한다.

제 27 조[수석교사의 배치]

- ① 수석교사는 가급적 단설유치원에 1인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② 교육지원청 관내 수석교사 배치는 유치원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행한다.

제 28 조[서열명부 작성]

- ① 수석교사는 지역별로 정원을 배정하고, 수석교사 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석교사의 시·군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에 따라 남·여를 통합하여 희망 교육지원청별로 전보서열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 ③ 도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최근 4년간의 수석교사 근무기간 중 〈표 1〉의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④ 전보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 유치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7.10.〉



부 칙 (2000. 12. 07. 초등 13060-22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 ① '93. 2. 28.이전에 인사 조치된 자의 동일 직위(동일교, 동일 급지) 근무연한은 '93학년도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94. 3. 1.이후 인사 조치된 자의 동일 직위(동일교, 동일 급지) 근무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94. 2. 28.이전의 급지 간 근무연한은 '94. 3. 1.이후에도 계속 경력으로 본다.
- ③ 2001. 3. 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나' 에서 '다' 급지로 변경된 진해(웅천, 웅동)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시행안 예고]

〈표2〉의 전보가산점 평정표 중 일부를 시행안 예고〈표2〉의 비고란 참조와 같이 조정하여 200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29. 인사위 12100-28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안 예고] 생략

부 칙 (2002. 11. 23. 인사위 12100-29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4학년도 시행안 예고]

〈표2〉 연구실적의 3.정보화관련 취득자에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자’를 추가하고 해당자에게 0.5를 부여한다.

부 칙 (2003. 11. 18. 인사위 12110-3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4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표2〉 연구실적의 3.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에게(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기술자격에 의한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0.3을 부여한다.

부 칙 (2004. 11. 29. 인사위-32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6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5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신규 채용 교사 중 성적 우수자(임용고시 상위 10%이내)는 본도 인사구역의 가 급지 또는 희망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 11. 23. 인사위-2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인사위-2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8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7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시·군내 유치원간의 전보와 시·군간 전보는 동일 직위, 동일유치원 1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②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통합학급 담임(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장애인등록복지카드 1-3급소지 학생)에게 0.5의 전보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표2> 근무실적에 종일반 운영 담당자(1년마다)의 가산점은 0.5를 부여하고, 방학중 종일반 운영 담당자(수업일수 260일 이상)에게는 1.0을 부여한다.
- ④ <표2> 연구실적에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추가하고 다음에 해당자에게 0.3을 부여한다.(유효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 시험성적 498이상
- ⑤ 제22조(교류)서열명부 작성시에 1년이상 부부 별거 중인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부양자는 다음 표와 같이 2순위에 부여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2 순위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내에 부부중 한사람이 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별거기간이 같은 경우 3자녀 부양자, 노부모 봉양자 순



부 칙 (2007. 11. 01. 인사위-0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09학년도 시행안 예고]

2008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원감의 경우 유치원 근무연한 만료자가 급지내 순환 전보지가 없을 경우 타 급지로 전보한다.
- ② <표 2> 근무실적에 미감아 담당자(1년마다) 가산점 1.0을 부여하는 것을 삭제한다.
- ③ <표 2> 근무실적에 2년간 지역센터유치원 근무자에게 (1년마다)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 ④ <표 2> 근무실적에 본도 다,라 급지 ㉔급지(시,군)이하 공립유치원 2년 계속 근무 시 1.0 부여, 초과근무(1년마다) 0.5점 부여하던 것을 삭제한다.
- ⑤ <표 2> 연구실적에 수업명사에게 1.0을 부여한다.

부 칙 (2008. 10. 30. 인사위-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03. 인사위-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 ① 2010.3.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나'에서 '다' 급지로 변경된 진해(웅천, 웅동)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 ② 2010.3.1.자 원감, 교사의 인사구역 급지가 '다' 급지에서 '나' 급지로 변경된 진해(웅천, 웅동)지역 근무자와 '나', '라' 급지에서 '다' 급지로 변경된 통영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 ③ 2010.3.1.자 원장의 인사구역 급지가 '가', '라'급 에서 '나' 급지로 변경된 통영지역 근무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201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매년 3월 1일자 기준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교사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는 우선할 수 있다.
- ②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부 칙 (2010. 11. 04. 인사위-1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12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1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5조(교사·원감의 전보서열명부 작성) ④항 <표2> 가산점평정표(유치원)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 2. (현행과 같음) 3. 유치원 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현행과 같음)	

- ② 제23조(타 시·도 간 교류) ①항의 표는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대상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 1급 장애인 부양(장애인 :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순위	○ (현행과 같음)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현행과 같음)

부 칙 (2011. 1. 31. 인사위-22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인사위-5109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3. 인사위-2391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 조치]

① 2012.3.1.자 유아체험교육원 전입자는 급지간 순환전보 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2015학년도 시행안 예고]

2013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급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가급지 근무연한 7년→8년)
- ② 교사·원감은 <표 1>과 같이 가, 나 급지의 근속연한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가, 나급지 근속연한 8년→10년)

부 칙 (2013. 10. 17. 인사위-761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인사위-402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8. 인사위-2015-2877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5. 인사위-2015-17141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인사위-2016-18630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인사위-2017-02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7. 인사위-2018-03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인사위-2019-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21학년도 시행안 예고]

2020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교사의 경우 가, 나 급지 통산하여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급지의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2. 인사위-2021-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2023~2024학년도 시행안 예고]

2022학년도 인사관리기준 중 아래 내용 ①은 2023년 3월 1일. ②는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을 예고한다.

- ① 제15조(교사·원감의 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③항 <표2> 가산점 평정(근무실적)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근무 실적 (전)	6. 최근 4년간 도서·벽지학교병설유치원 근무(6개월마다) ○ 가, 나 급지 ○ 다, 라 급지 7.~11. 현행과 같음	0.75 0.5	전교원	4년간 누가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6,7,8,9,10,11)
근무 실적 (후)	6. <삭제> 7.~11. 현행과 같음		전교원	<6호 삭제> (2023.3.1.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7.12.>
	15. 최근 4년간 파견근무자(6개월마다)	0.25		<신설 2021.7.12.> (2022.3.1.이후실적부터)
	16. 최근 2년간 12학급 이상 단설유치원 근무 원감 (6개월마다)	0.25		



② 제15조(교사·원감 전보 서열 명부 작성) ③항 <표2> 가산점 평정(연구실적)은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연구 실적 (전)	1. 도단위 이상 입상자	1.0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 2017.2.28.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 <개정 2019.7.8.>	0.5 0.2		
	3.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택일 적용 <개정 2012.10.23.>
	4. 영어능력 시험(유효기간 이내) ○ TOEFL시험성적 CBT 177, IBT 620이상 ○ TOEIC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990점) 시험성적 498이상, TEPS(만점600점) 시험성적 267이상<개정 2019.7.8.>	0.3	전교원	택일 적용
연구 실적 (후)	1. 도단위 이상 입상자	1.0	전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024.3.1.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7.12.>
	2.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 2017.2.28.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 <개정 2019.7.8.>	0.5 0.2		
	3. <삭제>	0.3		
	4. <삭제>	0.3	전교원	<3호 삭제> (2024.3.1.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7.12.> <4호 삭제> (2024.3.1.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7.12.>

부 칙 (2021. 10. 6. 인사위-2021-08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1. 인사위-2022-0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직위 근속연한

급 지	인 사 구 역		동 일 직 위			근 무 연 한		
	원장 인사구역	원감, 교사 인사구역	동일유치원 근속연한			동일 급지별 근속연한		
			원 장	원감, 교사	수석교사	원 장	원 감	수석교사 교 사
가	창원(동) 마산(동), 진해 진주시(동) 사천시(동) 김해시(동)	창원, 마산 진주시	4년	4년의 범위내에서 지역교육장이 정한다.	4년	6년	8년	8년
나	창원(면) 마산(면) 진주시(면) 통영시 사천시(면) 김해시(면) 양산시	진해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4년	"	4년	8년	10년	10년
다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4년	"	4년			
라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년	"	4년			

○ 원감, 교사 인사구역의 ‘나’ 급지에 창원시(진해 웅천, 웅동)지역 포함(2010.3.1.시행)

○ 원감, 교사 인사구역의 통영 ‘나’, ‘라’ 급지를 ‘다’ 급지로 변경(2010.3.1.시행)

○ 원장 인사구역의 통영 ‘가’, ‘라’ 급지를 ‘나’ 급지로 변경(2010.3.1.시행)

○ 원감, 교사 동일 급지별 근속연한 변경(2015.3.1.시행)

○ 가, 나 급지의 근속연한은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5.3.1.시행)

○ 교사의 경우 가, 나 급지 통산하여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급지의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1.3.1.시행>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교육감 표창이상, 훈포장 (모범공무원 표창 포함) 2. 교육장 표창 3. 유치원 과제 해결 및 직접 원아를 지도한 실적이 인정되는 타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4. 직속기관장 표창(2012.3.1. 이후 실적) 단, 현 소속 직속기관과 파견된 직속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불인정	1.0 0.7 1.0 0.7	전교원	4년간 2회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신설 2011.10.24.>
근무실적	1. 교육지원청지정이상 연구(시범·실험) 유치원 근무(6개월마다) (2015.2.28.이전 실적 0.5) 2. 교육지원청지정이상 연구(시범·실험) 학교의 병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015.3.1.이후 0.125) 3. 교육실습협력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원감은 2012.3.1. 이후 실적 (2015.3.1.이후 0.3)	0.3 0.25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1.10.24.>
	4. 지역거점(센타)유치원 및 교육과정거점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교육과정거점유치원 근무자는 2021.3.1.이후 실적) <개정 2020.7.13.> - 2014.2.28.이전 실적(6개월마다) 5.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담임 또는 복지카드 1~3급 소지학생의 담임 (2016.3.1.이후 실적) <개정 2015.5.15.><개정 2017.7.10.> ○ 6개월마다	0.25 0.5 0.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개정2013.10.17.>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개정 2015.5.15.>
	6. 최근 4년간 도서·벽지학교병설유치원 근무 (6개월마다)(2023.2.28.이전 실적) <개정 2021.7.12.> ○ 가, 나 급지 ○ 다, 라 급지 7. 2년간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대상자)(2016.2.29.이전 실적) <개정 2015.5.15.> ○ 6개월마다 8. 2년간 방과후과정 담당교사(2017.2.28.까지 실적) 방과후전담교사 제외-2016.3.1.실적부터 <개정 2015.5.15.><개정 2016.5.25.> ○ 6개월마다 ○ 연중 방과후과정 담당자 (연간수업일수260일 이상 운영자 1년마다) 9. 2년간 방과후과정 전담교사(6개월마다) (2020.3.1.이후 실적)<신설 2019.7.8.>	0.75 0.5 0.25 0.25 1.0 0.25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6, 7, 8, 9, 10, 11)

종별	평 정 대 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 고
근 무 실 적	10. 2년간 방과후과정 수업교사(2017.3.1. 실적부터) ○ 연중 방과후과정 260일 이상 수업교사(1년마다) ○ 방과후과정 포함 1일 8시간 수업교사 (6개월마다)<신설 2016.5.25.>	1.0 0.5		
	11.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0.5		
	12. 1년간 신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020.3.1.이후 실적)	0.5	전교원	<신설 2019.7.8.>
	13. 청렴도향상에 기여한자(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 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위반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현임교 1회만 인 정)<신설 2015.5.15.>(2016.3.1. 이후 실적)	0.5	전교원	<개정 2020.7.13.>
	14. 2년간 부장교사(6개월마다)(2021.3.1.이후 실적)	0.5		<신설 2020.7.13.>
	15. 최근 4년간 파견근무자(6개월마다)	0.25		<신설 2021.7.12.>
	16. 최근 2년간 12학급 이상 단설유치원 근무 원감 (6개월마다)	0.25		(2022.3.1.이후실적 부터 적용)
	17. 원감 미배치 유치원의 원감 업무 대행자 (1인만인정) (6개월마다)	0.25		<신설 2022.7.11.> (2023.3.1.이후실적 부터 적용)
연 구 실 적	1. 도단위 이상 입상자 2.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 2017.2.28.이전 실적<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 <개정 2019.7.8.>	1.0 0.5 0.2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적용) (2024.3.1.전보부터 4년간 2회 적용) <개정 2021.7.12.>
	3.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2.10.23.> <3호 삭제> (2024.3.1.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7.12.>
	4. 영어능력 시험(유효기간 이내) ○ TOEFL시험성적 CBT 177, IBT 620이상 ○ TOEIC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990점) 시험성적 498이상, TEPS(만점600점) 시험성적 2670이상<개정 2019.7.8.>	0.3	전교원	택일 적용 <4호 삭제> (2024.3.1.전보부터 적용) <개정 2021.7.12.>
	5. 수업명사(취득 후 10년간)<개정 2013.10.17.>	1.0	전교원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0.3	전교원	<신설 2012.10.23.>
우 우 조 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배우자(배우자, 직접 부양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1.0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0.5		
	3. 부모(배우자부모 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 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0.5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7.7.10.> <개정 2019.7.8.>
	4. 장애인(1년 이상 장애증명 소지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증명 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5. 55세 이상 교사	1.0	전교사	<개정 2019.7.8.>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6~7 중복 불가 <신설 2012.10.23.>
	7. 자녀가 2명인 교사	0.5	전교사	<신설 2021.7.12.>



[표 3]

유치원 교사, 원감 경력점 조건표(전보용)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

월	가 급 지	나 급 지	다 급 지	라 급 지	비 고
1	0.5	0.58	0.67	0.75	
2	1	1.17	1.33	1.5	
3	1.5	1.75	2	2.25	
4	2	2.33	2.67	3	
5	2.5	2.92	3.33	3.75	
6	3	3.50	4	4.5	
7	3.5	4.08	4.67	5.25	
8	4	4.67	5.33	6	
9	4.5	5.25	6	6.75	
10	5	5.83	6.67	7.5	
11	5.5	6.42	7.33	8.25	
12 (1년)	6	7	8	9	

특수(유치원)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제 법규에 의한 신규 채용, 전보, 전직, 승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과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및 특수교육전문직원 인사에 적용한다.〈개정 2016.5.25.〉〈개정 2020.7.13.〉

제 2 조2[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전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⑨항과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자가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유치원↔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개정 2015.5.15.〉〈개정 2020.7.13.〉

제 3 조[전보의 시기]

정기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단, 교사는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비정기 전보]

① 교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5, 6, 7, 8호는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8호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 인사권자 소속 인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10호는 본인의 희망과 전보권자의 승인에 의하며, 3호 해당자로 전보된 자는 2년 이내 전 근무지에 가급적 전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개정 2019.7.8.〉

1.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5. 현 근무기관(유치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6.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단, 이 경우 학교(원)장은 전보 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한다.
 7.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8. 기타 인사 쇄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시·군 관내 전보 제외)
 10.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1. 당해 교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12. 동일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원 및 직계 존·비속
 1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②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10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다.
1. 직위 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행정처분으로 인사조치가 결정된 자
 4. 당해학교에 재직 시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6. 학교경영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민원을 야기한 자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3 제①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9.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10.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①항 2~8호 해당자와 ②항 1~8호 해당자는 비경합지로 전보한다.
- ④ 학교(원)장은 학교(유치원) 운영상 교원의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 내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경합지에 내신하여야 한다.



제 5 조[인사 급지 및 근속연한]

- ① 동일 직위 및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생활 근거지 및 희망지 전보로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인사 급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교원의 순환 전보를 실시한다.
- ② '97. 3. 1. 이전의 특수학교 및 급지 간 근무 경력은 계속 근무로 본다.

제 6 조[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

- ① 전보 연한 계산과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은 2월 말일, 8월 말일 현재로 하며, 전보 연한 계산에서 1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4.>

제 2 장 신규 채용 및 계약제 교원 임용

제 7 조[교사, 신규 채용자 배정과 임용]

- ① 신규 채용자는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의거 임용 예정 인원 3배수 범위 내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배정한다.
- ② 신규 채용자는 희망에 따라 가급적 생활 근거지에 배치한다. 단, 그 지역에 경합이 있을 때와 학기 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교사로 채용되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경합 급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제 교원의 임용]

- ① 계약제 교원은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원)장이 임명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희망이 없을 경우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24.><개정 2020.7.13.>



제 3 장 승진

제 9 조[승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제청)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2. 교육공무원 임용 후 자격을 취득한 승진 후보자 명부 기 등재자

제 10 조[배치]

승진 임용자는 경합 급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단, 경합 급지 전입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전직

제 11 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교원을 특수교육 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제청)한다.

- ① 장학(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임용(제청)한다.
- ② 장학(교육연구)사는 교감 또는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으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③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 기능,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장학(교육연구)사는 해당 분야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 ④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경험이 있는 자의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은 ②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장의 전직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임용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되 가급적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한다.
- ⑥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직속 기관의 장학(교육연구)사 임용 절차는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12 조[특수교육 전문직원의 전직]

- ① 특수교육 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칙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5 장 전 보

제 13 조[교사·교감의 순환 및 희망 전보]

- ① 특수학교(급) 간의 전보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학교(급·특수교육지원센터) 간의 전보는 <표 1>과 같이 하되, 동일 학교(유치원)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2.10.23.>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당해지역 근속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2.28.이전 실적)<개정 2017.7.10.>
- ④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010.3.1.이후, 2018.2.28.이전 실적)<개정 2017.7.10.>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소속 교육장 또는 특수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보권자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1.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감, 연구부장(연구부장이 없는 학교는 연구 주무)
2. 정년퇴임을 1년 이내 앞둔 자
3. 학교경영상 꼭 필요한 특수영역의 우수교사<신설 2011.10.24.>
4. 다자녀교원(3자녀 이상)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교감, 교사<신설 2018.7.17.>
- ⑥ 학교(유치원) 간 전보는 <표 1>과 같은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실정에 따라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교사는 ‘가’, ‘나’ 급지 간 계속 근무연한을 통산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 ‘나’ 급지 만료자는 ‘다’, ‘라’ 급지에 전보한다.(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개정 2018.11.16.>
- ⑧ 교감의 급지 근무연한 만료자는 <표 1>에 준하여 전보한다.(단,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급지로의 전보는 불가하다.)<개정 2018.11.16.>
- ⑨ 장애 영역에 따라 전입하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교사의 장애(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사정상 타 학교(유치원)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원)장의 의견에 따라 장기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 ⑩ 익년도 급지 간 순환 전보 대상자는 학년 도중에 전보할 수 없다.
- ⑪ 매년 2월 말일 기준 만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교원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 배우자의 직장(1년 이상 재직) 또는 생활근거지(1년 이상 거주)로 이동시 해당지역 전보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만 2세 미만 자녀에는 2월말 일까지의 출산예정 자녀를 포함한다. 단, 전보 서열 명부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10.24.><개정 2012.10.23.><개정 2018.7.17.>
 1. 자녀 수가 많은 교원
 2. 전보 서열 명부 고점자 순(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①항)
 3. 2호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사관리기준 제15조 ④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⑫ 파견근무 확정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 <개정 2017.7.10.>
- ⑬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과원이 발생한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 ⑭ 교사의 경우 가, 나, 급지 통산하여 단설유치원 근무경력 2년간은 급지의 근속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7.13.>



제 14 조[전보 서열 명부 작성]

- ① 특수학교(유치원) 교원이 전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 가산점을 합산하여 학교(유치원)별로 전보 서열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7.7.10.〉
〈개정 2020.7.13.〉

- ② 경력점 평정은 최근 4년 간의 근무 기간 중 〈표 1〉의 인사 급지에 의거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되, 1년 이상은 연 단위로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단, ‘나’, ‘다’ 급지 근무자의 초과 경력은 4년에 한하여 1년마다 1점을 가산하되 현임 학교(유치원) 또는 시·군의 근속 초과 경력에 한한다. 타·시도 전임자의 전임지 인사구역 급지 경력점은 본 도의 ‘가’급지에 준하고, 초과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5.〉

휴직 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경력점 평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 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단, 도 단위 교육행정, 연구, 연수, 수련 기관 파견 근무자의 파견 기간은 당해 학교(유치원) 근무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다.(휴직·파견 기간 삽입 2015.3.1.이후 실적)
〈개정2014.10.13.〉

인사구역급지	가	나	다	라
1년간 경력점	6	7	8	9

- ③ 가산점은 〈표 2〉에 의거 최근 4년 간 현 인사구역에서 거양한 근무 실적에 한하되 우수 조건을 포함한다. 단, 휴직기간 또는 파견 기간이 평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평정 기간 직전의 실제 근무기간에서 이월하여 당해 평정에 산입한다.(휴직기간, 파견 기간 삽입은 2015.3.1. 이후 실적) 〈표 2〉 가산점 평정표 중 근무 실적의 경력 계산은 학년도 기준으로 하되 근무실적 1, 3, 4, 5, 6, 7, 8호는 6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교육청의 지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와 교과전담교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월마다 0.1점을 인정한다. 정보화 관련 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하며 〈개정 2013.10.17., 2014.10.13., 2015.5.15.〉, 수업명사 자격은 취득 후 10년간 가산점을 부여한다.〈개정 2016.5.25.〉 〈개정 2019.7.8.〉
- ④ 전보 서열 명부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고순위자를 결정한다.



1. 현임교 장기 근무자
2. 시·군 경력점 상위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개정 2017.7.10.>

제 15 조[교사 · 교감의 전보]

- ① 교사, 교감의 전보는 서열 명부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전보한다.
- ② 교육지원청 관내 급지 및 학교(유치원) 간의 전보는 교육장이 행한다.
<신설2016.5.25.>

제 16 조[교장의 순환 전보 및 희망 전보]

교장 전보는 학교 경영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 ① 동일 학교 근무 1년 6개월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급지 간 근속연한 만료자는 다른 급지에 전보한다.

제 17 조[교장의 전보의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근무자로서 연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2. 정년퇴임 1년 이내인 자

제 18 조[교육전문직원의 전보]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전보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①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동일 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한다.
- ② 당해 교육지원청 업무 추진과 인사 조직의 실정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③ 동일 근무처에서 5년 이상 동일 직위에서 근속한 자는 전보한다.(경남특수교육원은 3년으로 한다. 단, 2018.3.1.이후 실적) <개정 2017.7.10.>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속 기관장이 전보 유예를 신청하여(본인의 희망서 첨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 6 장 국·공립학교 및 시·도 간의 교류

제 19 조[국 · 공립학교 간의 교류]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의 3배수 추천에 의거 국립학교장이 임용한다.

- ①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의 급지 및 가산점 인정은 초등 인사관리 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고 희망지역의 전보 서열명부에 산입시킨다. 단, 근속연한 만기 근무자는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② 국립학교 전입자 중 ‘가’ 급지 근무자는 ‘가’ 급지 근무 만료 전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10.17.>

제 20 조[타 시·도 간 교류]

- ① 아래 표에 의거 서열 명부를 남·여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고순위 순으로 교류한다.

순위	대 상 자	순위별 결정기준
1 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8.7.17.><개정 2019.7.8.> ○ 다음 법률 해당자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가족(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2 순위	○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장애인: 배우자, 1대의 직계 존·비속) ※ 기존 1순위인 전출 희망 시·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급 장애인을 부양해야하는 자는 이 항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3.1.자 까지 1순위로 본다.<개정 2019.7.8.> ○ 별거 부부 3년 이상자 • 전출희망 시·도내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자 ○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자녀 3명 이상 자 ○ 노부모 봉양자 • 1년 이상 부부 별거 중인 자로서 전출희망 시·도에 부부 중 한 사람만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1년 이상 실제 봉양하고 있는 자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부부 별거 기간이 같은 경우 노부모 봉양자 우선
3 순위	○ 별거 부부 3년 미만자 ○ 근무희망 (생활 연고자 포함)	1. 부부 별거 기간 2. 본도 근속 경력 3. 교육 총경력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 ② 교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③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전출 희망지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전출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방전입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별도의 일방전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해 내신자를 통보할 수 있다.
 - ④ 전출 대상자 요건과 선정 순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개정 2013.10.17.〉

제 21 조[교환[파견]근무]

- ① 교육의 지역 간, 기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상호 1 : 1 동수 원칙으로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 ② 파견 요건 및 파견 대상자의 선정 등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2020. 7. 13. 인사위-2020-06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인사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특수(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적용된 인사기준은 2021. 특수(유치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7. 12. 인사위-2021-05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1. 인사위-2022-04호)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인사구역 및 동일 직위 근속연한

급 지	인 사 구 역		동 일 직 위		근 무 연 한		
	교장인사 구 역	교감, 교사 인사구역	동일교 근속연한		동일 급지별 근속연한		
			교 장	교감,교사	교 장	교 감	교 사
가	경남혜림학교 창원천광학교	창원, 마산 진주시 경남혜림학교 창원천광학교	4년	5년	6년	8년	10년
나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진해 (웅천, 웅동지역제외) 사천시(동) 김해시(동) 양산시(동) 진주해광학교 김해은혜학교	4년	5년	8년	10년	12년
다	의령은광학교 양산희망학교 밀양아리솔학교	진해(웅천, 웅동지역) 통영시(동) 사천시(면) 김해시(면) 양산시(면, 웅상지역)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은광학교 양산희망학교 밀양아리솔학교	4년	5년			
라	통영잠포학교 거창나래학교	통영시(면)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잠포학교 거창나래학교	4년	5년			
○ 「면」은 「읍」지역을 포함한다.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사구역 및 인사급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1.10.24.> ○ 교명변경 : 경남은혜학교 → 김해은혜학교(2017.3.1. 시행) 경남은광학교 → 의령은광학교(2021.3.1. 시행)							



〈표 2〉

가산점 평정표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표창	1. 교육감 표창 이상, 훈포장(모범공무원표창 포함) 2. 교육장 표창 3. 직속기관장 표창(2010.3.1.이후 실적) 4. 학교(유치원)과제 해결 및 직접 유아를 지도한 실적 이 인정되는 타 부처 장관 표창, 2011.3.1. 이후 실적	1.0 0.7 0.7 1.0	전교원	4년간 2회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근무실적	1.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정 이상 연구(시범·실험) 학교(유치원) 근무자(교육실습협력학교 유치원 포함 <특수학교 교육실습협력학교의 경우 가산점 인정 교사만 해당>, 2015.3.1.이후 실적) (6개월마다) (2015.2.28.이전 실적 0.5)	0.3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개정 2013.10.17.> <개정 2022.7.11.>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6개월마다) 3. 2년간 단설유치원 근무자(6개월마다) (2020.3.1.이후 실적) 4. 거점유치원(지역, 교육과정, 통합교육) 근무자 (6개월마다)(교육과정 및 통합교육거점유치원 근무자는 2021.3.1.이후 실적)	1.0 0.5 0.25		<신설 2019.7.8.> <개정 2020.7.13.>
	5. 1년간 신설유치원(단설신설, 병설신설학급 단, 증설학급은 제외) 근무자(6개월마다) (2021.3.1.이후 실적)	0.5		<신설 2020.7.13.>
	6. 청렴도향상에 기여한자 (조사기관에 신고하여 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의 위반행위 발견에 기여한 경우)(현임교 1회만 인정) <신설 2015.5.15.>(2016.3.1.이후 실적)	0.5	전교원	<개정 2020.7.13.>
연구실적	1. 전국 단위 입상자(학생지도 실적포함)	1.0	전교원	4년간 누가 적용 (동일 학년도 중복 경우 택일)
	2. 도 단위 입상자	0.5		
	3. 개인작품 발표자 및 저서 집필자(2인 공저포함) - 2017.2.28.이전 실적 <개정 2016.5.25.> - 2017.3.1.~2020.2.29. 실적 <개정 2019.7.8.>	0.5 0.2		<개정 2012.10.23.>
	4. 학습지도연구대회 도대회 입상자 (2010. 3.1.이후 실적)	0.75		
	- 특수교육수업연구교사연구대회 입상자 (2013.3.1.이후 실적)	0.75		



종별	평정대상	가산점	적용대상	비고
연구실적	5.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자(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 기술사, 기사(1,2급), 기능장, 기능사(1,2급) ○ 워드프로세서(1,2,3급, 단일 등급) ○ 컴퓨터활용능력(1,2,3급) ○ 정보활용능력인증 자격증취득자	0.3	전교원	택일적용
	6. 영어능력 시험(유효 기간 이내) ○ TOEFL 시험성적 CBT 177, IBT 62이상 ○ TOEIC 시험성적 595이상 ○ TEPS(만점990점) 시험성적 498이상, TEPS (만점600점) 시험성적 267이상 ○ ESPT 일반 3급 이상(2019.3.1. 이후 실적)	0.3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20.7.13.>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임용전 자격취득 포함)	0.3		<신설 2012.10.23.>
	8. 수업 명사(취득 후 10년간)	1.0		<신설 2016.5.25.>
우우조건	1. 국가유공자와 동 부양자(배우자, 직접 부양 하는 자녀와 그 배우자), 순직한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1.0	전교원	택일 적용 <개정 2011.10.24.> <개정 2017.7.10.> <개정 2019.7.8.>
	2. 부부교원(전문직 포함)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0.5		
	3. 부모(배우자 부모포함)를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봉양하고 있는 자	0.5		
	4. 장애인(1년 이상 장애증명소지자)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장애 증명소지자)을 인사 당해 학년도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	1.0		
	5. 55세 이상 교사	1.0	전교사	<개정 2019.7.8.>
	6. 자녀가 3명 이상인 교사	1.0	전교사	6~7 중복 불가 <개정 2012.10.23.>
	7. 자녀가 2명인 교사(2022.3.1.전보부터 적용)	0.5		<신설 2021.7.12.>

